우수교원선정규정 4-2-8

규정번호 4-2-8
제정일자 2008.3.1
최근개정 2023.3.30
개정차수 4차 개정
관리부서 교무입학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거하여 우리대학 전임교원으로서 업적이 뛰어난 우수교원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상부문) 우수교원상은 종합, 교육, 연구, 봉사, 산학부문으로 나누어 선정하여 시상한다.

1. 우수교수상 : 종합업적(교육, 연구, 봉사, 산학)이 우수한 교원 1인
2. 교 육 상 : 교육업적이 우수한 교원 3인 이내
3. 연 구 상 : 연구업적이 우수한 교원 3인 이내
4. 봉 사 상 : 봉사업적이 우수한 교원 3인 이내
5. 산학협력상 : 산학업적이 우수한 교원 3인 이내

제3조(시상시기) 매 학년도 기준으로 우수한 업적활동을 한 교원을 선발하여 시상한다.(개정 2022.04.08.)

제4조(심사위원회) ① 우수교원의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는 교수업적평가위원회로 구성한다.

② 우수교원선정 등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제5조(심사기준) ① 우수교원의 심사는 해당년도 교수업적평가에 따른 업적을 심사대상으로 한다.

② 교육, 연구, 봉사, 산학부문 우수교원으로 수상한 경우에는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해당 부문 우수교원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. 다만, 우수교수상은 3년 제한 없이 수상할 수 있으며, 우수교원으로 수상한 적이 있어도 우수교수상을 수상할 수 있다.

③ <삭제(2023.03.30.)>

제6조(추천 및 선정) 교수업적평가에 의해 업적점수 상위자를 우수교원 후보자로 추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.

제7조(시상) ① 수상자에게는 상패 또는 상장과 부상을 지급한다.(개정 2022.04.08.)

② 부상은 상금으로 하며, 그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.

제8조(보칙)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

①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선정기준 폐지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올해의교수상 선정기준은 폐지한다.

부 칙(학칙) <2009.2.26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개정) <1> - <30> <생략>

<31> 우수교원선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, 제7조②, 제8조 중 “학장”을 각각 “총장”으로 한다.

<32> - <102> <생략>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(제5조제3항)